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문

(2026.5.12.이후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부터 적용)

Ⅰ 개요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휴업','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형을 '고용유지조치'로** 통일

Ⅱ 지원대상

1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①~⑥ 중 하나에 해당)

* 매출액 감소요건

① 기준달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이상 감소**하는 사업주

②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주

(예시)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A회사에서 7.1.부터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 기준달은 6월이 되며,
- ①'25.12월~'26.2월(월평균 매출액: **100억**)→ ②'26.3월~'26.5월(월평균 매출액: **90억**) → ③6월(매출액: **80억**)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 지원대상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③「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④「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⑤「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잉공급 해소형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⑥「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간이 **90일이 지난 근로자**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일용근로자, 해고예고자, 권고사직 예정자, 피보험자격이 90일 이하인 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회사 취업 시 지원 제외

3 **(고용유지조치 실시)**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예시) 근로자 A~E를 피보험자로 둔 회사에서 휴업을 사용하는 경우

	A(휴업조치)	B(휴업조치)	C	D	E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209시간	209시간	209시간	209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150시간	150시간	209시간	209시간	209시간

A, B의 소정근로시간 단축률이 각각 20% 이상이므로, **A와 B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사업주는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유급휴업과 동일)로 '계획신고서'를 **매월**(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계획신고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전일까지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월 중간에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경우 고용유지조치일 실시 예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고용유지조치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로 보고, **달력상**(月)**의 1개월을 단위로 단축률**을 **산정**

* (예시) 5.13.~6.12.(1개월) 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계획서 **신고기한** ⇒ '26.5.12. 이전(1회차), 5.31. 이전(2회차)

소정근로시간 **20% 감축 여부 판단**을 위한 고용유지조치 단위기간

⇒ 1회차: 5.13~5.31/ 2회차: 6.1~6.12 (1·2회차 각각 20% 이상 감축)

○ 고용유지조치 규모율은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반복적인 경우도 제외)는 포함되지 않음.**

4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 수준)** 고용유지조치 기간 **평균임금 70% 이상의 금품(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단,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 10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금품으로 지급 가능)

> * **(통상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식비(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지급시)
>
> * **(평균임금)** 직전 3개월 임금 평균(기본급, 각종 수당(초과수당, 주말수당 등 포함) + 상여금(지난 1년분의 1/4) + 연차수당(지난 1년분의 1/4)

Ⅱ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구분	지원수준 (사업주 지급금품 기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우선지원) 2/3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률 50%이상	1일 68,100원(연 180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우선지원) 8/10 (대규모) 6/10 또는 7/10* * 단축률 50%이상	1일 68,100원(연 180일)
특별고용 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우선지원) 9/10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률 50%이상	(우선지원) 1일 7만원 (대규모) 1일 68,100원 (연 180일)

2 **(지원금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로 **부지급**

* (예시) 유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이 '26.5월(실시기간: 5.13.~5.31)에 이루어진 경우
  ⇒ 5월 고용유지지원금은 **'26.8.31.까지 신청**하여야 함

Ⅲ 지원제한

○ **(고용조정 제한)** 고용유지조치 시작일부터 종료일 직후 1개월까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고용조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을 의미

○ **(고용조정 이력에 대한 제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직전 2년 이내 기간 중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기간(월)에 대해 해당 기간 종료 후 6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을 한 경우, **금번 지원 제한**

> ※ '26.8.1. ~ 8.31.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경우, 이전 2년('24.8.1.~'26.7.31.) 기간내
>
> (사례1) 과거 고용유지조치가 '25.1.31.종료(신규 개시일까지 6개월 이상)
> - '25.1.31.기준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고용유지 장려기간('25.2.1.~'25.7.31.) 중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가 10% 이상이면 지원 제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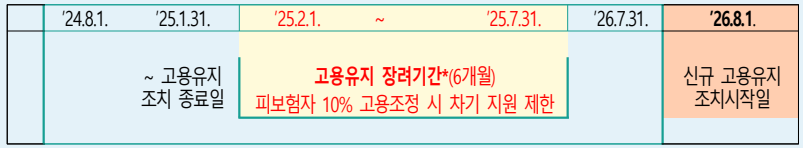
>
>
> * (고용유지 장려기간) 이전 2년 동안 지원받은 고용유지조치의 종료일 이후 6개월 기간
> - 단, 신규 고용유지조치 시작일 전까지만 적용)을 의미하며, 동 기간 내 고용조정된 피보험자 수로 신규 고용유지조치 지원 제한 판단
>
> (사례2) 과거 고용유지조치가 '26.4.30.종료(신규 개시일까지 6개월 미만)
> - '26.4.30.기준 전체 피보험자수 대비 고용유지 장려기간('26.5.1.~'26.7.31.) 중 고용조정된 피보험자수가 10% 이상이면 지원 제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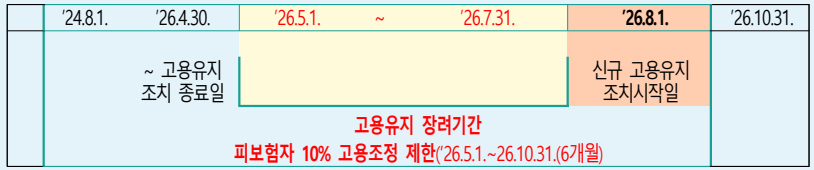
>

○ **(계획 미이행 제한)**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조치 대상자 수 · 실시기간 · **지급금품*** 중 어느 하나를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월은 부지급

* **(지급금품)** 임금보전 지급 기준과 실제 지급한 금품을 비교하여 동일 또는 많이 지급한

인원 비율로 이행여부 판단

○ **(고용보험료 체납시 제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 제한(단, 지원금 신청 기한 내 고용보험료 완납 후 신청 시 지원 가능)

○ **(신규채용시 제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한 사업주에 대해 해당월 지원 제한

* **(예외)**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한 경우, 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반복 신청시 제한)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대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주 및 **연례적·계절적으로 반복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제외(예시, 학교 급식업체 등)

Ⅳ 기타 요건

○ **(근로자 확인서)**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확인서 **3년간** 사업장 비치

Ⅲ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여부 결정	→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조정제한의무준수)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실시전일까지)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or.kr) 접속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유급 고용유지조치**
② **(우편)** (48267)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676 부산동부고용센터 5층 기업지원팀
③ **(FAX)** 051-719-4530

○ 신청시 제출서류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시 제출서류(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서 제출)

1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1부**〈붙임1〉
* 고용24로 계획신고서 접수시 제출 생략

2 **고용유지조치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① 대상자 명단 1부〈붙임1-1〉
② 근로자 확인서(대상 근로자 모두 작성) 사본 각 1부〈붙임2〉
③ 노사협의서 사본 1부〈붙임3〉

3 **유의사항 안내문 + 부정수급 관련 안내문 사본 1부**〈붙임4〉〈붙임4-1〉

4 **매출액 대비표 1부**〈〈붙임5〉 + **매출증빙자료 1부**
* 매출액 현황(세금계산서 및 매출원장〈부가세확인증명원〉, 홈텍스, POS 확인 등 증빙)

5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고용유지조치대상자) 사본 1부**
* 근로시간, 휴일, 임금부분 발췌,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6 **직전 3개월 임금대장 사본 1부**
*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휴업 실시 전 1년 이내 지급한 상여금 대장 사본도 제출

※ 최초 신청시 실시 **7일전까지**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 후 신고서 제출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노무사, 노무법인, 변호사 등이 업무대행 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첨부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1 **고용유지조치 계획 변경신고서 1부**〈붙임1〉
* 고용24로 계획 변경신고서 접수시 제출 생략

2 **고용유지조치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① 대상자 명단 1부〈붙임1-2〉〈붙임1-3〉
② 변경과 관련한 증빙자료(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③ 노사협의서 사본 1부〈붙임3〉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추가 등 중요내용 변경 → 고용유지조치 일자만 변경된 경우 생략 가능

※ 변경신고 이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일 전일까지** 신고서 제출

붙임 1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작성예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2026 년 제 1차(6월분) 고용유지조치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주	대표자 성명 홍◇◇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78*****-1*******	
	사업자등록번호 101-00-*****-0	상호명(법인명) 주식회사 △△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 대규모기업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101-00-*****-0	소재지 부산시 수영구 00로	담당자 성명 김 ○ ○
	②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051-000-0000 휴대전화: 010-0000-0000	담당자 팩스번호 051-000-0000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abcd@efg.com
	업종명	업종코드	
③ 파견·수급 사업장인 경우	사용(도급) 사업장 관리번호	사용(도급) 사업장 근무 중인 피보험자 수	
④ 신청자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해고·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 [ ] 아니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하고 해당 금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예 [ ] 아니오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⑤ (6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조치 일수)	2026.6.1.~6.30. (30 일)	
	⑥ (6월) 전체 피보험자 수	명	⑦ (6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 명
	⑧ (6월) 총 소정근로시간	시간	⑨ (6월) 단축예정 근로시간의 합계 시간
	⑩ 근로시간 단축률	%	
	⑪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단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지급기준	평균임금 70%	
⑫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별지 작성 가능)경기불황으로 '26.5월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이상 감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 년 5 월 31 일

신고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공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⑬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번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실근무장소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예시>	김철수 851201-1****** 부산시 수영구 00로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기존시간	09:00~18:00																
		(시간 수)	8																(기존 근로시간 수)
		단축시간	14:00~18:00																
		(시간 수)	4																(단축시간 수)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단축률)
		기존시간																	
		(시간 수)																	
		단축시간																	
		(시간 수)																	
1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기존시간																	
		(시간 수)																	(기존 근로시간 수)
		단축시간																	
		(시간 수)																	(단축시간 수)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단축률)
		기존시간																	
		(시간 수)																	
		단축시간																	
		(시간 수)																	
계																		명	

⑭ 사업주 확인서

1. 사업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경우
   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고용보험료 체납 상태인 경우
2. 「고용보험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다. 고용유지조치를 하려는 날의 전날 이전 2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직시킨 경우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대해 변경신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며, 100분의 50 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나. 고용유지조치기간
   다.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5.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해당 부정수급액 또는 부정수급하려는 금액의 2배 또는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6.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계획 포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7. 이번 신고서 제출 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본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향후 신청서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이용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8.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변경계획 포함)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후 3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 안함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서 심사를 위하여 연락 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의 연락처,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신청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인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가 근무 중인 사용(도급)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와 해당 사용(도급)사업장에 근무 중인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항을 '예'와 '아니오'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월의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및 조치를 실시한 일수를 적습니다.
6. ⑥란은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관계의 근로자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90일 이하(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7. ⑦란은 해당 월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려는 대상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8. ⑧란은 ⑥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 수의 해당 월에 대한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의 합계를 적습니다.
9. ⑨란은 ⑧란의 총 소정근로시간 중 ⑦란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에 대해 단축 예정인 근로시간(근로를 면제한 시간을 말합니다)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⑩란은 (⑨/⑧)×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11. ⑪란은 ⑨란의 단축 예정인 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12. ⑫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중 해당되는 사유를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증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13. 2쪽 ⑬란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별 조치계획 내용을 적되, '기존시간'은 각 일자별 근무시간대(소정근로시간) 및 시간 수를 적고, 아래의 '단축시간'은 고용유지조치로 인하여 근무를 면제받는 시간대 및 시간 수를 적습니다.
14. 2쪽 ⑭란은 사업주가 지원제외 사항 및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사항 등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신고	➔	접수	➔	확인·검토	➔	결재	➔	전산입력	➔	등록
신고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붙임 1-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작성예시)

연번	성 명	주민번호	휴업기간	담당업무	연락처
1	박□□	851201-1******	2026.6.1~2026.6.30.	관리직	010-0000-0000
2	이△△	810912-2******	2026.6.1~2026.6.30.	사무직	010-000-0000
3	홍○○	901111_1******	2026.6.1~2026.6.30.	설계직	010-000-0000
계					명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인)

붙임1-2 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근로자 1인당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작성예시

유급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대한 근로자 확인서

※ 본인은 (주식회사 △△)의 경영난으로 인한 (2026년 6월) 고용유지조치 실시에 동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성 명	박□□	근무 부서 (실근무장소)	관리팀 (부산시 수영구 00로 0000)
주민등록번호	851201-1******	근로계약기간	2020.1.1. ~ . . .
연 락 처	010-0000-0000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대)	1일 8시간 (9시 00분~ 18시 00분)

고용유지조치계획

○ (2026년 6월) 고용유지조치계획

1) 2026.6.1. ~ 2026.6.30. 기간내 고용유지조치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단축시간	14:00~18:00	14: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단축시간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09:00~18:00				

2) 상기 고용유지조치 기간에는 일체의 근로 제공이 없어야 합니다.

3) 개인사정(질병, 사고, 가사사정 등) 및 산재로 인한 휴업·휴직이 아님을 확인하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아닌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을 시에는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지급금품

○ (2026년 6월)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 금품으로 (평균임금 70% 지급)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금 보전 금품 산출내역

협의

○ 고용유지조치계획과 지급금품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처분

○ 위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계획이며,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도록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해당자도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장려금 부지급(기 지급분 반환), 추가징수(최대 5배), 부정수급액 기준 1년 범위 내 장려금 지급 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 해당 고용유지조치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처분 등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사용 불가)

위 내용에 동의하며 기재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5 월 31 일

확인자(근로자) 박□□ (서명 또는 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로부터 확인받았으며, 동 확인서를 고용유지조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5 월 31 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 귀하

붙임 2 노사협의서(작성예시)

1. 고용유지조치 사유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현재 직원수를 유지하기 어려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6.6.1.~ 2026.8.31.(3개월)
3. 고용유지조치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	-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 * 단,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 100%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금품으로 지급 가능 - 통상임금(기본급,직책수당,식대 고정급) 100% 지급
4.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박□□, 이△△, 홍○○ 등 3명
5. 고용유지조치 이후 후속조치	개인별 고용유지조치 기간 종료 후 원직 복직하도록 함

회사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사가 협의합니다.

2026년 5 월 25 일

사업장명: 사업장 대표: (서명)

근로자 대표: (서명)

이번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휴업 등)과 관련하여 김○○ 를(을) 근로자 대표로 선출 · 협의에 동의합니다.(또는 근로자 대표 없이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와 직접 협의-휴직대상자 반드시 포함)

연번	성 명	서 명	연번	성 명	서 명	연번	성 명	서 명
1			6			11		
2			7			12		
3			8			13		
4			9			14		
5			10			15		

※ **노동조합(단,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이 있는 경우** : 노동조합과 합의 또는 협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합의 또는 협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의록, 회의개최 시행공문 등 성실한 협의를 거쳤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대신 제출 가능(일방적인 계획통보가 아닌 협의의 내용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함)

붙임 3 유의사항 안내문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제출 사업장 유의사항 안내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가 접수되었다고 반드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귀 사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령 준수 및 계획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고용유지조치시(휴업 등)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금품(휴업수당 등) 지급해야 하며, 이때 근로한 시간에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일 또는 단축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 보존을 위해 지급한 금품(휴업수당 등)에 대해 일정 부분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③ 고용유지조치시(휴업 등) 사업주는 달력상 1개월 단위의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단축시 지원금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은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날까지 제출**하고, **지원금 신청서**는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을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제척기간 도과로 **부지급**합니다.

⑤ 고용유지조치 시작일부터 **종료일 직후 1개월까지**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

⑥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중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관계인 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등기이사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고용유지조치 시 지급하는 금품(휴업수당 등)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⑨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⑩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실제 휴업 등 이행 여부를 **매월 불시에 점검**합니다.

⑪ 고용유지조치(휴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초시 기간동안 **근로시간 관리(전자·기계적인 장비로 출퇴근 기록, 출퇴근 기록부 작성)**를 하여, 지원금 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 등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 . . .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1 유의사항 안내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관련 안내

◈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수급 사업주는 행정적 · 사법적 제재**를 받음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내용

① **지급받은 지원금 반환(지원받으려는 지원금 부지급 포함) 및 1년 범위 내 지원금 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②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47조(사기)>

《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사례 》

1. **피보험자격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①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거짓신고를 통한 지원금의 신청
   예) 입사일 · 퇴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4대 보험 신고
   ② 근무사실이 없는 **친인척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위장 취업**)하여 지원금 신청
2.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① 매출액, 재고량, 생산량 등을 기록한 서류의 변조 및 거짓 제출
   ②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대상자등의 거짓 신고
   ③ 출·퇴근부, 훈련실시현황 등의 거짓 작성 및 신고
   ④ 임금대장 및 그 밖에 급여 지급서류 등의 변조 및 거짓 신고
   ⑤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의 변조 또는 거짓 기재
   ⑥ 훈련비 등 비용정산서류의 위조 및 거짓 작성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위와 같이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인)

■ 부산동부고용센터(기업지원팀): 팩스 051-719-4530

붙임 4	매출액 대비표(작성예시)

○ **아래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되며,

○ 본 자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시 활용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 달: (유급) 휴업 시작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예: 2026.6.1. 휴업 시작 시, 기준 달은 2026.5월)

기준 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평균 매출액 보다 15% 이상 감소 (단위: 백만원)

기준 달의 직전 6개월							기준 달 (' 26.5월)	감소율
2025.11월	2025.12월	2026.1월	2026.2월	2026.3월	2026.4월	직전 6개월 평균매출액		
85	60	65	75	45	50	63.3	45	28.9%

※ 감소율 계산식: (63.3 - 45) / 63.3 × 100 = 28.9%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직전 6개월)								Ⓒ 기준 달 (' 26.5월)	감소 여부 Ⓐ>Ⓑ>Ⓒ
3개월				3개월					
2026.1월	2026.2월	2026.3월	Ⓐ 월평균	2026.2월	2026.3월	2026.4월	Ⓑ 월평균		
85	60	65	70	75	45	40	53.3	40	감소 Ⓐ>Ⓑ (23.9%) Ⓑ>Ⓒ (25.0%)

※ 감소율 계산식: [Ⓐ > Ⓑ] (70 - 53.3) / 70 × 100 = 23.9%
[Ⓑ > Ⓒ] (53.3 - 40) / 53.3 × 100 = 25.0%

위 매출액 대비표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만일 이에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시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이 부지급, 지급제한 또는 환수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 ◇ ◇ (인)

* 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서류(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집계표 등)를 제출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달의 매출액이 미확정 상태인 경우 확정 후 보완조치